

# 인공지능 민중통제를 위한 시민사회 개입전략

2026년 2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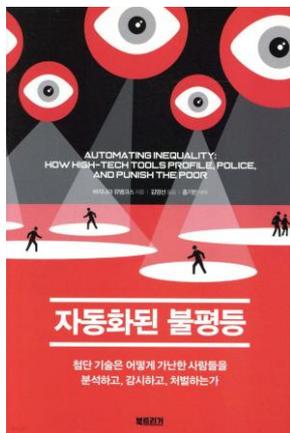
장여경

# 현장의 분투

# 인권 프리존

유엔 극빈과 인권 특별보고관 (A/74/493, 2019) : 디지털 복지국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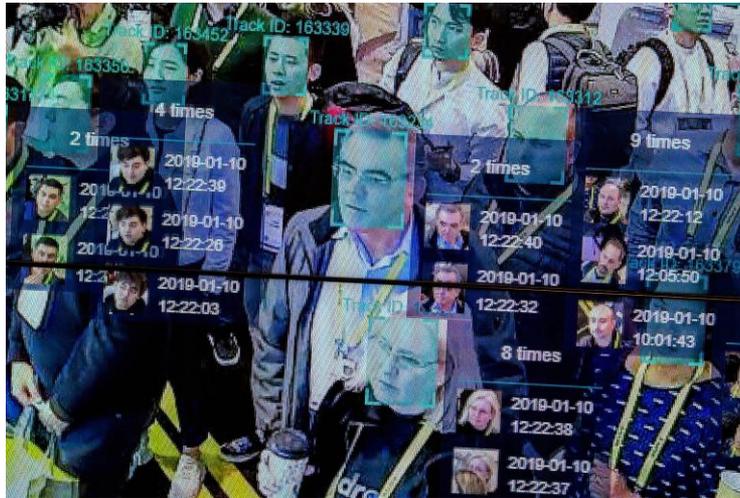
"우리 현실에서 국가는 기술 산업을 인권이 걸린 문제로 규제하고 있지 않으며, [인공지능] 신기술 부문은 거의 인권 공백지대 (human rights free-zone)에 존재한다."



# 사회복지 시의 비밀 알고리즘

네덜란드 부정수급탐지 인공지능에 대한 시민사회 공익소송 (2020)

"프라이버시 보호조치가 충분하지 않고 작동 원리에 대한 투명성이 중대하게 결여되어 있다."



# 공공 고용평가 시의 비밀 알고리즘

미국 휴스턴 교사노조, 교육청 교사평가 알고리즘에 적법절차 요구 (2014)

"매우 중요한 공공 고용 관련 의사결정에 헌법상 적법절차 준수  
해야 ... 비밀 알고리즘의 공공 도입 중단"



# 플랫폼 노동자

우버/올라 플랫폼 노동자들의 알고리즘 알권리 요구 (2022)



# 창작 노동자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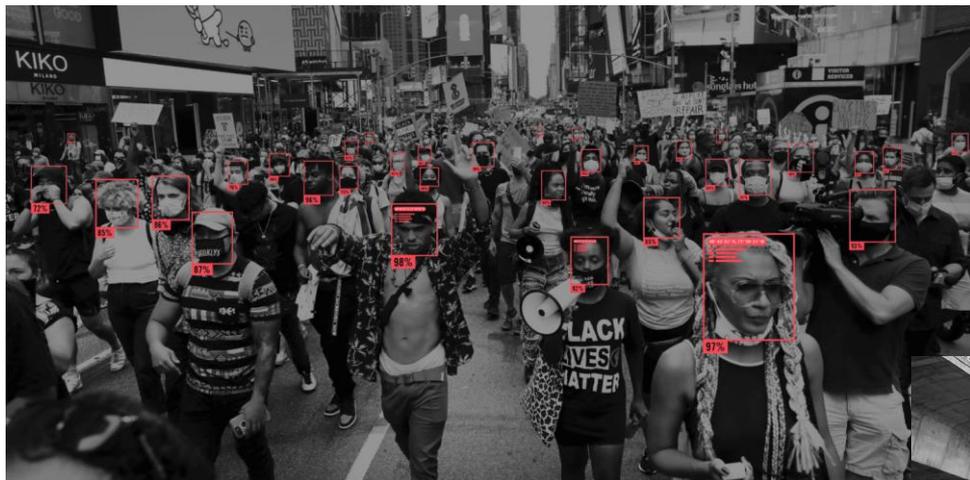
“시가 내것 뺏어가” 할리우드 배우-작가, 63년만에 동반파업 | 동아일보

\* 자료: 한겨레 2024. 2. 13. “나 몰래 나를 연기하지 마”... '생성 AI' 단협 체결한 할리우드 배우노조

## 2023년 제작사-배우조합 '생성 인공지능' 관련 주요 합의 내용

- ☑ 배우가 연기하지 않은 내용을 생성할 경우 48시간 전 통지, 명시적 동의 필수
- ☑ 해당 장면을 연기자가 직접 연기했다면 걸렸을 시간을 계산해 급여 지급
- ☑ 배우가 촬영한 화면이나 소리가 녹화 상태 그대로 유지되지 않는다면 명시적 동의 필수
- ☑ 배우의 디지털 복제본 제작 시 사용 목적에 대해 구체적 설명 필수
- ☑ 생성 인공지능을 엑스트라 고용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 금지
- ☑ 생성 인공지능을 통한 '모조 연기자'를 쓸 때는 고용에 미칠 영향을 고려
- ☑ 배우를 대신해 모조 연기자를 사용하는 경우 조합에 통지하고 교섭할 기회를 부여
- ☑ 특정 배우 떠올리게 하는 이름과 얼굴 등 가진 모조 연기자를 제작할 때 해당 배우 동의 필수

# 경찰의 공공장소 실시간 얼굴인식



얼굴인식 금지 캠페인  
Ban the Scan

우리 얼굴을 되찾자  
Reclaim your Face



# 데이터 규제 완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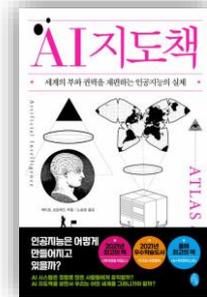


# 데이터센터



# 수탈과 추출로 작동하는 AI 산업

- 지구적 자원 수탈
- 저임금 노동 착취
- 모든 행동과 감정 데이터 추출



- "인공지능 기술은 불가피하다"는 정보자본주의 합리화
- 인공지능 기술에 대한 '추상화'에서 벗어나 구체적인 삶의 경험으로 맞서야

# 자본의 연결지점과 저항

- 인공지능 산업의 노동-기후환경-데이터에 대한 수탈과 추출이 지구적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에서 정의를 요구하는 저항의 연대
- 기후환경정의 - 노동정의 - 데이터정의
- 인공지능의 생산구조는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 기초해 있으며, 불평등한 기존 사회의 패턴을 학습하고, 불투명한 방식으로 결과물을 산출함으로써 사회 불평등을 악화시킨다.  
정의운동은 세계의 패턴을 바꾸기 위해 함께 싸워야

# 정보인권운동의 제안: 인공지능 인권기반접근

# 인공지능과 우리 세계

"수학적 모형은 본질적으로 과거에 기반을 두며,  
패턴이 반복될 것이라는 전제에 근거한다."

- 캐시 오닐 (대량살상수학무기, 2016)

"인공지능 시스템에 세상의 아름다움, 추함, 잔인함을  
먹이면서 그것이 아름다움만을 반영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 
환상이다." - 비르하네와 프라부 (팀닛 게브루와 동료들, 2021,  
"확률적 앵무새의 위험"에서 재인용)

# 인공지능의 인권 위험 식별

유엔 극빈과 인권에 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(2019)

- "첫째, 일반 인구 집단의 행동에서 도출된 예측을 바탕으로 개인의 권리를 결정함으로써 많은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.
- 둘째, 기술의 기능과 특정 점수 또는 분류에 도달하는 방법은 종종 비밀로 지정되어 있어, 정부와 민간 행위자의 권리 침해 가능성을 파악하기 어렵다.
- 셋째, 위험점수를 계산하고 수요를 분류하는 것이 기존의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."

# 규범 공백에 윤리적 대응

전문가 실행자 주도

기업

## ‘아실로마 AI 원칙’ 1년 뒤...카카오 ‘알고리즘 윤리 규범’ 발표

입력 : 2018-02-02 13:20:49 수정 : 2018-02-02 13:33:51



### 보도자료

4차산업혁명의 큰길로 대한민국이 달려갑니다



보도일시	2020. 12. 23.(수) 11:00 이후 부터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		
배포일시	2020. 12. 22.(화) 14:00	담당부서	인공지능기반정책과
담당과장	김경만(044-202-6270)	담당자	유주연 사무관(044-202-6276)

### 과기정통부, 사람이 중심이 되는 「인공지능(AI) 윤리기준」 마련

- 공개 공청회(12.7) 등 각계 전문가·시민 공개 의견수렴 거쳐 발표-
- ‘인간성(Humanity)을 위한 인공지능(AI)’의 3대 원칙·10대 요건 담아 -

# 기업 활동을 위한 "자율적" 준수

인공지능 윤리기준 (과학기술정보통신부, 2020)

(목표 및 지향점) ① 모든 사회 구성원이 ② 모든 분야에서 ③ 자율적으로 준수하며 ④ 지속 발전하는 윤리기준을 지향한다.

③구속력 있는 '법'이나 '지침'이 아닌 도덕적 규범이자 자율규범으로, 기업 자율성을 존중하고 인공지능 기술발전을 장려하며 기술과 사회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윤리 담론을 형성

# 국제인권기구의 비판

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(A/73/348, 2018)

"민간 부문이 윤리에 초점을 맞추고 공공 부문이 윤리를 강조하는 데에는 인권 기반 규제에 대한 저항이 내포되어 있다."

# 기업과 인권 규범

유엔 Human Rights Business and Human Rights in Technology Project  
(B-Tech, 2019~)

-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(UNGP, 2011):  
보호-존중-구제 프레임워크
  - \* 신자유주의 세계화 이후 초국적 기업 활동이 국내법의 집행력을 벗어나고  
그로 인한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구제 공백이 발생함. 이에 대응하기 위한  
국제인권규범의 모색에서 출발 (John Ruggie, 2013)
- "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디지털 기술에 적용"  
<https://www.ohchr.org/en/business-and-human-rights/b-tech-project>

# 기업과 인권 규범의 제도화 노력

"기업과 인권 이행지침 자체는 자발적인 규범이지만, 그 안에 담긴 원칙과 접근법은 EU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, EU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, 그리고 EU 디지털서비스법과 EU AI법과 같은 기술 중심 규제를 포함해 세계 법률과 규제에 통합되고 있다."

- BSR (2025). Fundamentals of a Human Rights-Based Approach to Generative AI

# 인권기반접근 제안

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

- 인간은 인공지능 시스템의 목적과 산출물을 정의하는 과정에서 점점 배제되고 있으며, 그에 따라 투명성, 책임성, 그리고 효과적인 구제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.
- 기업과 정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획 단계부터 구현 단계까지 조사가 가능하고 이의 제기가 보장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.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갖는 인권적 함의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이다.

# 인권기반접근 개념

유엔 사무총장 (A/HRC/43/29, 2020)

- 인권기반접근은... 사람들을 개별적인 권리 주체로 바라보고, 이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며, 인권 침해와 남용에 대해 권리를 행사하고 구제에 접근할 수 있는 법적·제도적 환경을 촉진하는 접근이다.

# 권리주체의 식별: 영향 받는 사람

- 기업 활동과 관련된 인권 침해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보호 의무의 일환으로, 국가는 사법적·행정적·입법적 또는 그 밖의 적절한 수단을 통해 자국의 영토 및 관할권 내에서 그러한 침해가 발생할 경우,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효과적인 구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. (UNGP)
- "영향받는 자"란 인공지능제품 또는 인공지능서비스에 의하여 자신의 생명,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받는 자를 말한다. (인공지능기본법 제2조 제9호)

# 영향받는 사람의 (집단적) 참여

유엔 사무총장 (2020)

"국가는 권리주체, 특히 가장 큰 영향을 받거나 부정적인 결과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**권리주체가** 개발 과정에 효과적으로 **참여하고 기여할 수** 있는 기회를 창출하고 특정한 신기술의 채택을 촉진해야 한다. **국가는 참여 보장과 포용적 의견수렴**을 통해서, 경제적 효율성, 환경적 지속 가능성, 포용성 및 형평성을 갖춘 균형적이고 통합적인 지속 가능 개발 목표에 있어 어떤 기술이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지 결정할 수 있다."

# 인공지능 시대 민주주의

- 영향받는 자는 인공지능의 최종결과 도출에 활용된 주요 기준 및 원리 등에 대하여 기술적·합리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명확하고 의미 있는 설명을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(인공지능기본법 제3조).
  - 불투명한 빅테크 종속으로부터 공공성 확보에까지 이르러야
- 국가적이고 개별적인 인공지능 의사결정에 참여~통제
  - 직장AI에 대한 노동조합 협상권



# 영향 받는 사람의 구제

## EU AI법 및 유럽평의회 AI 기본협약

- 관할 당국에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잠재성이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**정보를 제공**해야 하며, 특정한 경우에는 영향받는 당사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.
- 인공지능 기반 결정의 영향을 받은 사람은 해당 결정에 **이의를 제기**할 수 있어야 하며, 특정한 경우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자체에 관한 **정보에 접근**할 수 있어야 한다.
- 관련된 사람은 관할 당국에 **진정을 제기**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.

# 권리의 식별: AI에 대한 요구사항

국가인권위원회 (2022)  
<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 
인권 가이드라인>

유럽평의회 (2024)  
<인공지능과 인권, 민주주의, 법치주의에 관한  
유럽평의회 기본협약>

1. 인간의 존엄성
2. 투명성과 설명 의무
3. 자기결정권의 보장
4. 차별 금지
5. 인공지능 인권영향평가 시행
6. 위험도 등급 및 관련 법·제도 마련

1. 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
2. 투명성과 감독
3. 책무성과 책임성
4. 평등과 차별금지
5. 사생활 보호와 개인정보 보호
6. 신뢰성
7. 안전한 혁신

# 기업의 반발: '트레이드오프'

- "인공지능에 투명성을 요구하면  
인공지능 혁신기술의  
정확성을 양보해야 한다."



국가와 기업의  
인권 의무(책무)

- \*보호-존중-구제
- \*인권실사-인권영향평가

AI의  
투명성 및 책무성

- \*설명가능성
- \*이의제기가능성
- \*인간의 감독 등

인공지능  
인권기반  
접근

# 집단적 권리의 구성 필요성

- 권력관계 불균형 심화 속에 개인화된 권리의 한계
- 시스템으로 도입되는 인공지능에 대한 개인의 선택불가능
- 집단적인 객체화에 집단적인 권리로 응수할 필요성



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 대해

-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알 권리
- 집단적이고 사회적으로 참여하고 통제할 권리

**감사합니다**